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6년 5월호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다. 금융투자업규정

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아.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나. 표준투자권유준칙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4/2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국내외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현재 미국 ·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Single Stock)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
 - 이로 인해 그간 보다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2) 주요 내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제80조 제1항 제5호)
 -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 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동일 종목 증권 운용한도 완화(제252조 제1항 제1호 가목)
 -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운용한도 상향 조정
 - (기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30'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보도자료 및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개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100분의 100'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상품설명서 적용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개정)
- 다. 금융투자업규정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장외거래 허용)
- 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등의 범위 개정)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6/4/2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및 개선된 금융상품설명서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상품설명서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제13조 제1항 제5호 나목)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등에도 적용토록 규정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별표 7)
 - 부과·납부 절차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2026/4/15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고 조치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제13조 제1항 제5호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제25조 제1항 제5호)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증원
 - (기존) 5인 → (개정) 10인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수를 5인으로 구성
- 과징금 부과비율의 산정에 있어 감안사유 판단기준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개정(별표 2 제4호 다목, 별표 4 제3호)
 -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상한 조정 사유에서 삭제
 - 과징금을 가중하는 '3개 이상의 종목에 관여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

다. 금융투자업규정 (2026/4/16 개정 · 시행, 2026/4/28 개정 · 시행)

1) 2026/4/16 개정 · 시행

가) 개정 이유

-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많은 유형 중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을 발굴 및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
 -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국정과제 47.)의 일환으로 국내 증시의 장기 ·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노력을 추진
 - 국내 투자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내 증시 유입을 도모

나) 주요 내용

-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경우 장외거래 허용(제6-7조 제1항 제20호 신설)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 포함) 외에서 매매 또는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로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8조 제2호 가목)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을 추가

□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 제1항 본문)

- 자본시장법 개정(2023.6.13.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2) 2026/4/28 개정 · 시행

가) 개정 이유

□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를 위함

- 국내 · 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

나) 주요 내용

□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제4-52조 제1항, 제7-26조 제2항 및 제4항 등)

-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를 허용

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2026/4/2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기초자산 종목과 상품유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 등(제5-6조의2 신설)

- (종목)

-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 100분의 10 이상
-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거래대금 비중 100분의 5 이상

— (상품유형)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2배(음의 배율도 포함)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대상증권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 상장 근거 마련)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마련)
-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별주식 및 ETF에 대한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 마련)
-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출방식 개선)
-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근거규정 마련)
-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외 사유 추가)
- 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기업성장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의 종목별 예약한도 산정)
- 아.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 재설정)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026/4/15 개정·2026/4/28 시행)

1) 개정 이유

- 국내외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자의 편의를 강화하고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하기 위함
 - 단일종목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을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금융위, 2026.1.30)’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2) 주요 내용

-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 상장 근거 마련(제113조 제2항 제4호 다목 (5), 제149조의3 제2항 제2호 다목)
 - 국내상장 우량주의 가격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의 상장 허용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초자산 요건(시가총액, 유동성 등)을 준용(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 주권 시장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제116조 제1항 제2의2호, 제149조의7 제2호 다목, 제153조 제1항 제12호, 부칙 제2조)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각 규정에 따라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 마련(제116조 제1항 제1호)

-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목표로 하는 가격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일정수준(패시브 0.9, 액티브 0.7) 미달 시 상장폐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존)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규율
 - (개정)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규율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26/4/27 개정·2026/4/28 시행, 2026/4/26 개정·2026/5/1 시행)

1) 2026/4/27 개정·2026/4/28 시행

가) 개정 이유

-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 도입과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마련(제123조의3, 별표 2의5)

-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초자산 요건(시기총액, 유동성 등)을 준용하도록 기초자산 요건 마련
 - 해당 기초자산 요건 등을 포함하는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표준화 요건 마련

□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의 상장·관리요건 정비 및 투자자 보호 요건 마련(별표 2의3, 별표 2의5, 부칙 제2조)

- 정방향 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 금지
- 정방향 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일종목 기반 파생형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지수증권의 상장 허용
- 투자자가 단일종목 기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장 시 종목명에 '단일종목' 용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 각 규정에 따라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될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 상장지수증권도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 상장지수증권과 기초자산인 주권의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을 연계하는 근거 마련

2) 2026/4/26 개정 · 2026/5/1 시행

가) 개정 이유

- '부실기업 신속 ·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026.2.12., 관계기관 합동) 관련 조치로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 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상장폐지절차 효율화(제19조 제3항)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
 - (기존) 1심 : 최대 1년, 2심 : 최대 1년, 1+2심 합산 : 최대 2년
 - (개정) 1심 : 최대 1년, 2심 : 최대 0.5년, 1+2심 합산 : 최대 1년

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2026/4/15 개정 · 2026/6/29 시행)

1) 개정 이유

-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위클리옵션의 대상상품을 확대하여 코스피 6000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개별주식 및 ETF에 대한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 마련(제9조, 제30조, 제37조의7)
 - 위클리상품에 대한 총칙 근거 조항 마련
 - 위클리옵션의 대상 상품을 개별주식옵션 및 ETF옵션으로 확대

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4/9 개정 · 2026/4/13 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제도의 회원 포지션 집중 제한 효과를 제고하고, 위험유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산출 및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비현금성 대용증권 납입 한도 명확화(제91조 제1항 제2호)
 - 자기분 거래증거금에 적용되는 비현금성 대용증권 납입 한도는 순위험증거금액에 적용됨을 명확화
 - 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그룹의 경우 제94조의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출방식 개선(제94조의2 제1항 및 별표 19의5)
 - 회원별 순위험거래증거금 합계액(자기분과 위탁분 합산)에 순위험증거금비율에 따라 산출된 부과율을 적용하여 신용위험거래증거금 필요액 산출
 - (순위험증거금비율) 회원별 순위험거래증거금 합계액 ÷ 신용위험한도액
 - (부과율) 신용위험거래증거금 부과율

순위험 증거금비율	1.5 이상~2 미만	2 이상~3 미만	3 이상~4 미만	4 이상~5 미만	5 이상
부과율	2.5%	5.0%	15.0%	20.0%	30.0%

- 신용위험거래증거금 납입 방법 변경(제94조의2 제2항)
 - 신용위험거래증거금을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입 수단 제한
 - 자기 재산으로 납부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위탁자 재산으로 납부시 현금 및 외화

- 거래증거금 산출 단위 명확화(제93조 제1항)
 - 거래증거금 중 순위험거래증거금에 한하여 계좌별로 산출됨을 명시(신용위험거래증거금은 회원단위 산출)

- 위탁자 재산 사용시 통지 의무 신설(제94조의2 제3항)
 - 위탁자 재산으로 신용위험거래증거금 납부시 해당 내역을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6/4/24 개정 · 2026/4/2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2025.8.27., 금융위) 참고

2) 주요 내용

- 새벽공시 허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제21조의5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신고기한의 다음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BDC는 정규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없어 9시에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근거규정 마련(제21조의6 신설)
 - BDC 존립에 관한 합병, 감사의견 비적정,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 사항에 한하여 조회공시 요구
 -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조회공시 관련 풍문과 보도는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일반일간신문 등의 보도로 제한
 - 일반일간신문,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
 - 미확정공시의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 의무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에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음
- 중대한 소송의 제기(제21조의7 신설)
 -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효력이나 경영,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제기 시 공시의무 부과
- 불성실공시(공시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제21조의8 신설)
 -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분기 중 총 취득금액 또는 분기 중 총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평가금액의 변동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투자자산의 추가취득과 일부 또는 전부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수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 투자자산의 추가취득과 일부 또는 전부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할 때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공표방법(제21조의9 신설)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정지를 위한 규정 신설(제21조의10)

- 조회공시 불응시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
 -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 다음날 매매거래 재개
 -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거래개시 시간 이전인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
- 투자자보호를 위한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신고 절차 신설(제21조의11)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의 절차와 필수 제출 서식 마련

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026/4/24 개정 · 2026/4/2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종목의 특성 및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외 사유 추가(제3조 제6항 제4호)

- 종목의 특성 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사유 신설

사.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6/4/17 개정 · 2026/4/27 시행)

1) 개정 이유

-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 내에 개설됨에 따라 대응증권에 관한 사항 등 청산결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대응증권 중 주식군으로 분류하고 주식군의 적격성 평가 적용(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호)
 -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응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대응증권의 대응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응증권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4조 제2항)
 -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응증권이 상장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산정(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7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및 대응가격 산출(제48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52조 제1항, 제54조)
 - (산출 및 적용시기)
 - 상장지수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은 일별로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 수익증권,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 초일부터 그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
 - (산출방법) 대응증권의 대응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상장지수증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10원 금액 미만은 버림
 -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기준시세는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
 - 사정비율은 산출일로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는 제외)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산출

아.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2026/4/28 개정 · 2026/5/4 시행)

1) 개정 이유

- 종전형집합투자지구 상장형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지구 도입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제8조의2)
 - 상장형 수익증권,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추가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4.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심화 사전교육 도입)
 나. 표준투자권유준칙 (초저위험상품의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평가 합리화)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026/4/10 개정·2026/5/22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투자 전 심화 사전교육 도입 및 기본예탁금 제도 적용 등을 반영하기 위함
 - 금융위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2026.1.30.)’ 발표

2) 주요 내용

-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관련 명칭 사용 제한(제4-11조)
 -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 명칭에 ‘단일종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판매·광고 등에 있어서 ‘ETF’ 등 명칭 사용 금지
 - 펀드,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 등의 명칭 사용 금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심화 사전교육 도입(제4-12조)
 -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거래시 심화 사전교육 추가 이수 의무 부과
 - 기존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심화 사전교육 추가 이수 의무 면제(부칙 제2조)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도입(제4-13조)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적용
 -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현금 범위에 외화도 포함 가능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각 국가별 매매일을 기준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

-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며, 거래계좌 최초 설정시 1,000만원 이상 적용

나. 표준투자권유준칙 (2026/4/9 개정 · 2026/4/10 시행)

1) 개정 이유

- 금감원의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운영 결과(2025.12.22)의 '초저위험 상품의 투자금 성향 평가 합리화' 조치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초저위험(6등급) 상품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 · 평가 합리화(회사참고사항 8-1, 참고 1)
 - 원금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매우 낮은 위험의 금융상품으로 위험등급 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단계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평가' 생략 허용
 - 위험태도,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일반적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